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87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그간 단열·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,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~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 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(경제 규제혁신 TF, '22.7.28)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(안 제86조제1항 개정)
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.5미터 이상을,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,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.5미터 이상을,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.

나.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(안 제118조제1항 개정)  
다.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

제15조제6항 개정)

라.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사 범위 명확화(안 제17조 개정)

종합/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사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

마.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(안 제27조의2 개정)

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,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·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“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18호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
- 전화(☎) 044-201-4082, 3763 / 팩스 044-201-5574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(전화 044-201-37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